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가.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장소 협소등으로 2002. 10월 개관이후 대관 실적이 전무한 전시관리동 2층 취미교실(43.56㎡)대관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소공연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)

나. 관리동 취미교실(43.56㎡)대관 폐지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제130조」

○ 입법예고 : 2005. 10. 25 ~ 11. 14(20일간, 별도의견 없음)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완공됨에 따른 회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 되어 회관 각 공연장 또는 교실의 사용범위와 신설되는 소강당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

○ 제4조 제1호중 취미교실을 삭제하고, 대신 소공연장을 추가하여, 소공연장의 사용료를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인데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2005. 12. 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